#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복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**1341** 

발의연월일: 2017. 5.

발 의 자:이복희, 서경환, 권태호

김경환, 신성봉, 김영길

천병태, 이효상, 김순점

**강혜순** (10명)

1. 제정이유

번호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·지원함으로써,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성실 ·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명시(안 제2조 및 제3조)

1) 공통사항

• 선정기준일 : 해마다 1월 1일

•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·법인

2) 성실납세자 :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

3) 모범납세자 :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,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

나. 성실 · 모범납세자 선정 방법 등(안 제4조)

다. 성실 · 모범납세자의 우대 · 지원 사항(안 제5조)

- 1)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
- 2)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공영주 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
- 3)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
- 4)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라. 사후관리 및 우대ㆍ지원 취소 등(안 제6조)

### 3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세기본법」제138조

나.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6조제4항제5호

4. 제정조례안 : "따로 붙임"

###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[목적]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·지원함으로써,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[정의]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지방세"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 구세(이하 "구세"라 한다) 및 울산광역시 시세를 말한다.
- 2. "성실납세자"란 선정기준일(해마다 1월 1일로 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최근 3년간 구세(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)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 지 전액 납부한 법인·개인을 말한다.
- 3. "모범납세자"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 만원 이상,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가 없는 법인·개인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 및 대상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세수 증대에 기여한 성실·모범납세자를 우대·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(이하 "지원대상자"라 한다)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.
  - 1. 성실납세자
  - 2. 모범납세자(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)
- **제4조(지원대상자 선정)**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. 다만,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·개인은 제외할 수 있다.
  - 1.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 한다.

- 2.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기여도, 구세 납부액,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**제5조[지원방법 등]**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
  - 2.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
  - 3.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
 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  -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·모범납세자증(스티커)을 교부하며,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6조(사후관리)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탈세·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5 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한다.

제7조[시행규칙]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

##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·모범납세자

차량번호 :

유효기간: 20 . . ~ 20 . .

위 차량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성실 ·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차량입니다.

20 . . .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인)

# [별지 제2호서식]

# 성실・모범납세자 관리대장

구분	등록 일자	인증 번호	인증 기간	성 명 (법인명)	주 소 (소재지)	전화번호	관리내용

# 근 거 법 규

### □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38조(전자송달,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)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 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 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## 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□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제6조[주차요금 등] ① ~ ③ (생 략)

-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과 같다. 다만,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.
- 1. ~ 4. (생 략)
- 5.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,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 한 성실 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 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.
- 6. ~ 10. (생 략)
- ⑤ ~ ⑥ (생 략)

# 시·군·구「성실납세자 조례」제정 현황

=	구 분				비고	
계 (226)			226)	(109)		
서 울	<b>특</b> 별 .	시	(25)	(5)	중 구, 광진구, 양천구, 구로구, 송파구	
부 산	광 역	시	(16)	(1)	남 구	
대 구	광 역	시	(8)	(5)	남 구, 북 구, 수성구, 달서구, 달성군	시 제정
인 천	광 역 .	시	(10)	(3)	연수구, 남동구, 계양구	시 제정
광 주	광 주 광 역 시 (5)		(5)	(4)	동 구,서 구,북 구,광산구	
대 전	광 역 .	시	(5)	(5)	동 구, 중 구, 서 구, 유성구, 대덕구	시 제정
울 산	광 역	시	(5)	(4)	남 구, 동 구, 북 구, 울주군	시 제정
세 종 특 별 자 치 시 (0)				(0)		시 제정
			(31)	(22)	수원시, 성남시, 고양시, 안양시, 안산시	
					용인시, 의정부, 남양주, 평택시, 시흥시	
경	기 .	도			구리시, 포천시, 광주시, 안성시, 의왕시	도 제정
					양주시, 오산시, 양평군, 동두천, 과천시	
					가평군, 연천군	
강	원 .	도	(10)	(9)	원주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	
	건 .	<u> </u>	(10)	(9)	영월군, 철원군, 고성군, 양양군	
   충 청	보	두	(11)	(9)	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옥천군, 진천군	
		_			괴산군, 음성군, 단양군, 증평군	
   충 청	남 .	도	(15)	(10)	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	
					논산시, 부여군, 홍성군, 예산군, 당진시	
전 라	북 .	도	(14)	(5)	전주시, 완주군, 무주군, 부안군, 남원시	
전 라	남 .	도	(22)	(4)	목포시, 나주시, 고흥군, 무안군	
경 상	북	도	(23)	(8)	경주시, 김천시, 안동시, 구미시, 청도군	
					칠곡군, 예천군, 봉화군	
					창원시, 진주시, 통영시, 사천시, 김해시	
경 상	남 .	도	(18)	(15)	거제시, 양산시, 함안군, 창녕군, 고성군	도 제정
					남해군, 하동군, 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	
제주특	별 자 치	도	(0)	(0)		

의 안 번 호

1341

### [울산광역시 중구 성실 ·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]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5. 3.(수)

나. 제 출 자 : 이복희 의원 외 9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5. 8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5. 15.(월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)

### 가. 제정이유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·지원함으로써,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성실·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명시(안 제2조 및 제3조)
  - O 공통사항
    - 선정기준일 : 해마다 1월 1일
    -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ㆍ법인
  - O 성실납세자 :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 한까지 전액 납부
  - O 모범납세자 :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,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 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
- 2) 성실 · 모범납세자 선정 방법 등(안 제4조)
- 3) 성실 · 모범납세자의 우대 · 지원 사항(안 제5조)
  - O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
  -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
  - O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
  - O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4) 사후관리 및 우대·지원 취소 등(안 제6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1)「지방세기본법」제138조
- 2)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- 3)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제5호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 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·지원함으로써,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 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- 「지방세기본법」제138조에 따른 위임 조례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성립 되며,
-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표창 및 주차요금 면제 등 행정적·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납세의식을 높임으로써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